

##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(제14조 관련)

### 1. 배합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

#### 가. 표시사항

- 1) 사료의 성분등록번호
- 2) 사료의 명칭 및 형태
- 3) 등록성분량
- 4) 사용한 원료의 명칭
- 5)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
- 6) 주의사항
- 7) 사료의 용도
- 8) 실제 중량 (kg 또는 톤)
- 9) 제조(수입)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
- 10) 제조(수입)업자의 상호(공장 명칭) · 주소 및 전화번호
- 11) 재포장 내용
- 12)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, 사료의 절감 · 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#### 나. 표시방법

- 1)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배합사료의 명칭을 사용한다.
- 2) 사료의 형태는 사료 내용물이 처리된 형태를 표시한다.

#### 가) 종류

- (1) 가루: 곱게 가루로 만든 것
- (2) 펠릿: 가루사료를 일종의 주형틀에서 압착하거나 밀어내어 성형시킨 것
- (3) 크럼블: 펠릿으로 성형한 사료를 특정목적에 맞게 분쇄 · 선별한 것
- (4) 후레이크: 사료를 그대로 또는 증기로 찌서 납작하게 압편

(壓片)한 것

(5) 익스투루전(팽화): 압력 및 온도를 가하여 전분을 호화(糊化)한 후 부피를 팽창시킨 것

(6) 액상: 용액으로 된 것

(7) 그 밖의 형태: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

나) 표시 예

사료의 형태: 펠릿사료

3) 등록 성분량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표시하며, 성분량 표시는 백분율(%)로 하고, 최저량에는 "이상", 최대량에는 "이하"를 표시한다.

4)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배합비율이 큰 순서대로 적는다. 다만, 식물성의 곡류, 강피류 및 박류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쓰지 아니하고 곡류·강피류·박류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며, 첨가한 단미사료 중 광물성과 보조사료는 명칭을 적고, 다음 내용을 덧붙일 수 있다.

"위 사용 원료는 공장 사정에 따라 배합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"

5)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은 첨가한 동물용의약품의 명칭(상품명은 괄호 안에 적을 수 있음)과 사용된 함량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,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"동물용의약품 첨가사료"로 표시하며, 휴약기간(休藥期間)이 있는 동물용의약품 일 경우에는 그 휴약기간을 명시한다.

6) 주의사항은 사료의 사용과 보관,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증성분표 하단에 **(주의):**

형태로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하고,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가 포함된 배합사료에는 "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"를 표시하여야 한다.

7) 사료의 용도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, 수요자가 혼란을 줄 정도로 사료의 명칭에 비하여 제

품의 상품명을 과대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8) 실제 중량은 제품의 실제 중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, 단위는 포장 크기에 따라 "kg" 또는 "톤"으로 표시한다.
- 9) 제조(수입) 연월일과 유통기간은 제조(수입)포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하게 표시한다.
- 10) 재포장 내용은 재포장 사유·날짜·중량, 재포장한 자의 상호·주소·전화번호를 표시하고, 그 외에 등록성분량 등은 재포장 전에 표시된 대로 표시하여야 하며,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만 할 수 있다.

## 2.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

### 가. 표시사항

- 1) 사료의 성분등록번호
- 2) 사료의 명칭 및 형태
- 3) 등록성분량
- 4) 사용한 원료의 명칭
- 5) 사료의 용도
- 6) 주의사항
- 7) 실제 중량 (kg 또는 톤)
- 8) 제조(수입) 연월일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
- 9) 제조(수입)업자의 상호(공장 명칭)·주소 및 전화번호
- 10) 재포장 내용
- 11)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, 사료의 절감·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### 나. 표시방법

- 1)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명을 사용하여야 하며, 실제 거래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괄호 안에 표시할 수 있다.
- 2)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사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품명을 적는다.

3) 삭제 <2015.1.2.>

4) 주의사항은 사료의 사용과 보관,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증성분표 하단에 그 내용을

(주의):  형태로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구체적으

로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는 "반추가축 사료로 사용금지 또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"라고, 돼지전용 남은음식물사료(80℃에서 30분이상 가열)는 "돼지 외에는 먹이지 마십시오"라고 각각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.

5) 사료의 형태, 등록성분량, 사료의 용도, 실제 중량, 제조(수입) 연월일,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및 재포장 내용은 배합사료의 표시방법과 같다.

6) 삭제 <2015.1.2.>